

# 시설공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2019.05.22. 개정 2022.03.04. 개정 2025.03.24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혜전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시설공사의 원활한 진행과 타당성 심의를 위한 시설공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기능)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타당성 및 진행여부를 심의결정 한다.

- ① 학과시설 환경구축공사(강의실 및 실습실 제외)<개정 2025.03.24.>
- ② 일반시설공사
  - 1. 건물 신축, 중·개축공사
  - 2. 부대시설보수공사
  - 3. 구축물공사 및 기타공사 등

## 제3조 (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당연직 2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
- ③ 위원회에 간사(총무처 소속 직원) 1인을 두며 교무처장, 총무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기타 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2.03.04.>

## 제4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각 위원의 임무와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6조 (회의 및 의결)

- ① 학과시설공사는 학과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 1. 학과시설공사는 해당학과 학과장이 발의한다.
- ② 일반시설공사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개최한다.
- ③ 위원장은 총장 또는 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자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

야 한다.

-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7조 (회의록작성)

위원회 간사는 회의록을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출석위원 1인 이상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운영세칙)

시설공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은 총무처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03.04.>

부 칙(2019.05.2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3.0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3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3.2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03월 24일부터 시행한다.